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708
----------	-------

발의연월일 : 2023. 12. 1.

발 의 자 : 권명호 · 강기훈 · 구자근
김용판 · 김희국 · 박대수
안병길 · 이채익 · 이태규
정우택 · 지성호 · 최영희
최춘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등으로 수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성과보고서 상에는 당초의 예산에 대한 사업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과의 성과내용이 제대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할 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과 관련되는 성과를 발췌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토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71조 및 제85조의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8호 중 “제85조의7”을 “제85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71조제4호 중 “제85조의7”을 “제85조의7제2항”으로 한다.

제85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과 관련되는 성과를 발췌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요구서에 대한 성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7
의 개정규정은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u>제85조의7</u> 에 따른 성과계획서 9. ~ 16. (생략)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제85조의7제1항</u> ----- ----- 9. ~ 16. (현행과 같음)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략) 4. <u>제85조의7</u> 에 따른 성과계획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85조의7제2항</u> -----

서 5. ~ 7. (생 략)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 5. ~ 7. (현행과 같음)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① ----- ----- ----- -----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과 관련되는 성과를 발췌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